

독일 통일과 동독인들의 서독 유입 문제

이재원 외*

들어가는 말

지난 해 연이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는 연말에 김경호 씨 일가 17명이 집단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남한에 도착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연변을 비롯해 중국 일대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3000여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과 맞물려 앞으로 탈북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놓고서 다소 선부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통일과정을 먼저 겪은 독일의 경우에는 탈동독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상적으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1989년 견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동독 탈출자들의 물결과 더불어 그리고 동독 내에서 계속된 시위자들의 대열과 더불어 왔다. 물론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나 것처럼 급속도로 통일을 이루게 된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89년 가을의 이주 물결은 사회적 폭발 - 정치상황의 혁명적 변화 - 의 표현이자 결과이며 또한 촉발제이기도 했다.

Die Übersiedlerbewegung vor allem im Herbst 1989 war Ausdruck, Resultat, aber auch Auslöser einer sozialen Eruption - einer revolutionären Veränderung der politischen Verhältnisse.²⁾

* 독일학연구소 독일 통일 관련 집담회 사회·문화분과 (팀장: 이재황, 팀원: 김누리, 김영옥, 강창우, 이재원, 최윤영)

1. 개념 정의 - '이주자' 및 '탈출자'에 대하여

독일 통일의 역사 속에서 구서독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자들을 일컬어 '이주자 Übersiedler'라는 말이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말이 공식적인 개념어로 사용될 때에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말에는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동서독 관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이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 대체로 어떠한 개념 내용을 지니고서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소위 '연방 긴급수용 절차'라는 행정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주자'란 - 법적으로 독일인으로서 - 동독 관청의 출국 허가를 받아 동독 국적을 상실한 채 구서독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하게 된 동독으로부터의 서독 유입자를 뜻하였다.

Er[=Übersiedler] bezeichnete im administrativen Kontext des sogenannten Bundesnotaufnahmeverfahrens - rechtlich deutsche - Zuwanderer aus der DDR, die sich mit Ausreisegenehmigung der DDR-Behörden und unter Verlust der DDR-Staatsbürgerschaft dauerhaft in der früher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ederließen.³⁾

이와 같이 동서독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이주자'라는 말은 단순히 거처를 옮긴 자를 일컫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동독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을 뜻한다. 현재 우리의 통일 공간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동독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동독인 '이주자'와 구분하여 '동독 탈출자 DDR-Flüchtling'라는 말이 사용된다.⁴⁾

2) Siegfried Grundmann: Außen- und Binnenmigration der DDR 1989. In: Deutschland Archiv, 9. 1990, S.1424.

3) Werner Weidenfeld/ 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3, S.643.

4)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자들 중에는 서독 정부에 의해 몸값이 지불된 후 서독으로 인도된 동독의 정치범들 - 이들은 'Freigekaufte'라고 불리워짐 - 도 있는데, 이들은 '이주자'로도, '탈출자'로도 분류될 수 없는 또 다른 부류이다.

이러한 구분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부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자들을 일컬어 '난민 Flüchtling'⁵⁾이라고 불렀다. 또한 장벽이 유명무실하게 된 1989년 1월 1일부터는 동독에서 넘어온 자들은 모두 '이주자'라고 불리워졌다. 한편 동독에서는 이들에 대해 '출국자 Ausreiser'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탈출자'는 '불법적 출국자'이고 '이주자'는 '합법적 출국자'인 셈이다. 1990년 6월 30일 연방 긴급수용법이 폐지된 이후로는 '이주자'라는 개념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을 뜻하는 '국내 이주 Binnenwanderung'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한편 통일 과정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들 중에는 동유럽에 살던 독일계 유민들도 있는데, 이들은 '귀국 제외 동포 Aussiedler'라고 불리워진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이 글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의 조선족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 글의 뒷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동독의 역사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이주 및 탈출은 동독이 세워진 이래 이를 막으려는 동독 정부의 온갖 시도⁶⁾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다. 이같은 탈동

-
- 5) 원어인 Flüchtling은 탈출자와 피난민, 두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다. 장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불법적으로 동독을 탈출한 '동독 탈출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난민'이라는 여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은 탈출자와 이주자의 구분 없이 이를 모두 포괄한다.
- 6)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세운 이후 동서독 접경 지역에 지뢰나 자동발사장치 등을 설치해 놓았으며 허가 없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213조의 '불법적인 월경행위 ungesetzlicher Grenzübertritt' 조항에 따라 발사 명령이 내려졌다. 출국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영구출국 및 국적포기 신청서 Antrag auf ständige Ausreise aus der DDR und Entlassung aus der Staatsbürgerschaft'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대개 2년에서 5년 정도씩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 심지어는 해고까지 -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단절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출국 허가도 가족방문과 이산가족상봉 목적에 한해서만 내려졌고, 그것도 주로 직업활동 능력이 없는 연금생활자에게로 한정되었다. 또한 출국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거듭해

독의 흐름은 곧 “동독의 지속적인 국가적 위기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증거 ein deutlich sichtbarer Indikator für die permanente Staatskrise der DDR”⁷⁾라 할 수 있으며, 그 수의 변화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동독 탈출의 움직임은 이미 동독 정부의 수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소련 점령지역으로부터 전문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자 소련 점령당국은 1946년 서방 연합국 측에 양 점령지역 간의 군사분계선을 잠정적으로 봉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1952년 서독과 연합 3국 간에 합의된 ‘독일 조약 Deutschland-Vertrag’⁸⁾에 대한 대응으로 동독 정부는 동서독 간의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까지 매년 수십만 명씩의 동독인들이 국경을 넘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그 수는 총 230만 명에 달하였다. 그때에는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다.

동독 측은 1961년 체제 불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던 ‘공화국 탈출 Republikflucht’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였고, 그 후 탈출자 수는 격감한다. 1960년대에는 70-80%가 직업활동 능력이 없는 연금생활자에게만 출국 허가가 나왔다. 70년대에도 이주자의 40%가 60세 이상의 연금생활자였다.

8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평화 및 군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환경 의식이 고조되었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으나, 동독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전과 별 다름없이 어떠한 저항의 시도에 대해서도

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14조의 ‘공무방해 Beeinträchtigung staatlicher und gesellschaftlicher Tätigkeit’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았다. 동독을 탈출하기 위해 서방의 기관에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불법 접촉 및 내란음모적 접촉 행위 ungesetzliche bzw. landesverräterische Verbindungsaufnahme’에 해당되었고, 동독 시민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반국가적 인신매매 행위 staatsfeindlicher Menschenhandel’로 간주되었으며, 탈출에 협력한 사람도 역시 처벌을 받았다. Vgl. Thomas Ammer: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1/1989, S.1206-1208.

- 7) Hartmut Wend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Bilanz einer 40jä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In: Deutschland Archiv 4. 1991, S.386.
- 8) 1952년 5월 26일에 체결된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연합 3국 간의 관계에 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Drei Mächten’이며, 점령통치의 종결과 독일의 방위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강력한 응징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주로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서만 출국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주를 원하는 동독인들의 수를 조정하고자 했으며, 출국 신청자들에게도 유형·무형의 탄압이 가해졌다. 허가를 받은 이주자의 수는 그때그때의 양독관계의 기류에 따라 좌우되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소위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 내에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동독에서도 변혁과 개혁에 대한 희망이 싹텄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완고한 동독 지도부에 의해 곧 좌절되었으며 동독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념의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개혁을 희망할 수 없게 되자 출국 신청이 엄청난 수로 증가하였다. 체제 불안을 초래하는 이 출국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동독 정부는 기존의 출국 허가 정책을 변화시켰다. 그에 따라 1984년에는 가장 많은 수인 35,000명이 출국 허가를 받았으며, 젊은 층에 대한 허가도 늘어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독에 남아 개혁을 바라는 비판적 시민들이 점차 조직화되었다.

1989년 5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의 국경이 개방되자 이를 통한 탈동독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 11월 9일에는 마침내 동서독 간의 국경마저 개방되었고 이후 동독인 이주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46%가 25세 이하였으며, 65세 이상은 3%에 불과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제불가능하게 된 이같은 출국자의 물결은 결국 동독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1990년 3월 18일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희망이 가시화되자 비로소 동독인 이주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1950년에서 1989년 말까지 탈출이나 이주를 통해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들의 수는 모두 310만 명이 넘는다.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수는 47만여 명에 불과하므로 동독 쪽에서 보면 40년간 약 260만의 인구가 빠져나간 셈이다. 1949년의 129,000명과 1990년 전반기의 238,000명을 포함시키면 그 수는 350만이 넘는다. (→ 이상 도표 1-1, 1-2 참조)

3. 탈출 및 이주의 동기

1989년 10월에서 1990년 3월까지 이주자 수용소에서 사는 18세 이상의 동독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⁹⁾에 따르면 탈출 및 이주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억압과 개인적 부자유에 있었다. 그 다음의 원인으로서는 서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활수준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황폐화된 경제상황(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환경오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조건, 불충분한 의료시설, 주입식 교육, 낙후된 교통 및 통신 시설, 여가기회의 부족 등이다. 그 밖의 원인으로서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있다.

또한 탈출 및 이주의 동기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⁰⁾

1) 1961년까지

정치적 동기 56% (양심의 갈등과 기본권 제한 12%, 정보원 활동 강요에 대한 거부 29%), 경제적 동기 23% (강제 집단화, 국유화, 수입과 주거 수준의 개선 희망), 가정적·개인적 동기 15% 등.

2) 1980년대

사상의 자유 결핍 71%, 정치적 압력 66%, 여행 가능성의 제한 56%, 생필품 부족 46%,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재 45%, 친척관계 36% 등. (문항에 대한 중복 답변 허용)

3) 1989년 12월-1월

정치적 조건 93%, 개인적 부자유 86%, 낮은 생활 수준과 환경 조건 88%, 열악한 노동조건 72%, 친척관계 59% 등. (문항에 대한 중복 답변 허용)

9) Vgl. Dieter Voigt/Hannelore Belitz-Demiriz/Sabine Meck: Di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ß. Sozial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ungen von Flüchtlingen/ Übersiedlern aus der DDR vor und nach der Grenzöffnung. In: Deutschland Archiv, 5/1990, S.736/7.

10) Ebd.

4. 서독 정부의 탈출자 및 이주자 대책

서독의 기본법 제 11조에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제 116조에는 동독 지역의 주민 또한 서독의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독에서 넘어온 이주자들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서독에 정착할 수 있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인 난민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50년 8월 22일 '독일인의 서독 지역에서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약칭 '긴급수용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61년 6월 29일에 개정되었고, 1990년 6월 30일에 폐지되었다.

동독인 이주자 및 탈출자들은 이 긴급수용법에 의거하여 베를린과 기센에 있는 수용소에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고, 각 주정부 대표자와의 협의 하에 각 주로 배분되어 정착하였다. 이때 수용소 체류시 연방 정부로부터 일회 보조금으로 일인당 200마르크와 주정부로부터 가장(家長) 30마르크, 가족 일인당 15마르크 씩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주자들이 수용될 주(州)는 개인적 연고관계에 따른 이주자들의 희망과 각 주정부의 직장 및 주택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정착할 주(州)에 도착한 이주자들은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거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하면서 주거를 소개받았다. 그때 주택건설법 제25조에 따라 동독인 이주자는 이주 후 5년간은 주거 구입시 우선권을 얻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난민 복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주정부는 이 예산을 자체 예산과 함께 난민 주택건설에 사용하였다.

또한 동독인 이주자들은 '연방 추방자법 Bundesvertriebenengesetz' 제 92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 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서를 인정받았으며, '연방 교육지원법 Bundes- ausbildungsförderungsgesetz'(약칭 BAFöG)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 제 52조와 제 33조에 따라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도 주어졌는데, -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적용지역에

서 주거신고를 한 해를 기준으로 또는 난민 수용증명서가 발급된 해를 기준으로 - 이주 후 3년간 세금이 면제되었고, 의복과 가구의 구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액을 고려하여 세금을 공제받았으며, 공장 건물과 창고에 대해서는 특별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밖에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수당, 산재보험 등에 있어서도 동독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서독 국민과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¹¹⁾

나오는 말

동서독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동독인 이주자들의 문제는 분단과 통일 사이의 과도상태가 쉽게 안정화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책과 전망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다. 통일과 더불어 이주 및 탈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정치적 억압과 개인의 부자유는 사라졌지만 양쪽 지역 사이에 생활수준의 차이와 실업을 차이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인 동기에서 구동독 지역으로부터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구 동서독인들 간에 심리적 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통일이 되고 6년이 지난 현재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오히려 구 동서독인들에게 서로 간의 이질감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안고서 다시 구동독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올 정도이다.¹²⁾

통일 이전부터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많았던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은 이처럼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독일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충고하듯이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

11) 동서독 교류협력 자료집, 통일원, 1994. 307-312쪽 참조.

12) Vgl. Der Spiegel 26, 1996.

과 상호교류일 것이다.

* '귀국 재외동포'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귀국 재외동포의 문제는 '추방자'라는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방 추방자법 Bundesvertriebenengesetz'¹³⁾의 규정에 따르면 '추방자 Vertriebener'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독일 국민 또는 독일 민족으로서, 현재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독일의 동쪽 지역이나 1937년 12월 31일 기준의 영토구분에 따른 독일제국의 국경 바깥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시 추방이나 피난으로 고향을 잃은 자.
- 독일 국민 또는 독일 민족으로서, (...) 전반적인 추방조치의 종결 이후 현재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독일의 동쪽 지역, 단써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혹은 중국을 떠났거나 떠나는 자.
- Vertriebener ist, wer als deutscher Staatsangehöriger oder deutscher Volkszugehöriger seinen Wohnsitz in den zur Zeit unter fremder Verwaltung stehenden deutschen Ostgebieten oder in den Gebieten außerhalb der Grenzen des Deutschen Reiches nach dem Gebietsstande vom 31. Dezember 1937 hatte und diesen im Zusammenhang mit den Ereignissen des Zweiten Weltkrieges infolge Vertreibung, insbesondere durch Ausweisung oder Flucht, verloren hat.
- Vertriebener ist auch, wer als deutscher Staatsangehöriger oder deutscher Volkszugehöriger [...] nach Abschluß der allgemeinen Vertreibungsmaßnahmen die zur Zeit unter fremder Verwaltung stehenden deutschen Ostgebiete, Danzig, Estland, Lettland, Litauen, die Sowjetunion, Polen, die Tschechoslowakei, Ungarn, Rumänien, Bulgarien, Jugoslawien, Albanien oder China verlassen hat oder verläßt.¹⁴⁾

13) 1971년 9월 3일에 제정된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추방자와 피난민 문제에 관한 법 Das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이다.

14) Handbuch, S. 682/683

따라서 '추방자'라는 개념은 2차대전 발발 이후 거주하던 동유럽의 여러 지역들로부터 추방되어 강제 이주를 당한 독일인들을 비롯하여 1944년 가을 이후 소개되었거나 1945년 초 전반적인 피난의 대열 속에서 살던 땅을 잃은 독일인들을 포괄한다. 그 수는 대략 1,800만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그중 상당수는 독일로 돌아왔으나 또한 상당수는 유민으로 떠돌다가 다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하였다.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결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이 오더-나이세 선 Oder-Neiße-Linie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지에 남아 있던 독일인들이 독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방은 1949년까지 어느 정도 종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에도 최소한 500만의 독일인들이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부 및 동부 유럽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950년에서 1988년까지 150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곧 '귀국 해외동포 Aussiedler'이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대체로 이산가족 상봉 대열에 속해서거나 서독과 동유럽 국가들 간의 협상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독의 경제원조에 대한 댓가로 수많은 독일인들의 서독 이주를 허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1975년 폴란드는 23억 마르크의 경제원조를 받기로 하고 12만 명의 독일인들을 놓아주었다.

1950년 이후 서독과 동독으로 돌아온 귀국 재외동포의 수는 약 200만명 이고, 현재는 대략 350만명의 독일인들이 아직 동부와 동남부 유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표 2 참조)

참고문헌

- Ammer, Thomas: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1/1989, S.1206-1208.
- Grundmann, Siegfried: Außen-und Binnenmigration der DDR 1989. In: *Deutschland Archiv*, 9/1990, S.1422-1432.

- Voigt, Dieter/ Belitz-Demiriz, Hannelore/ Meck, Sabine: Di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ß. Sozial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ungen von Flüchtlingen/ Übersiedlern aus der DDR vor und nach der Grenzöffnung. In: *Deutschland Archiv*, 5/1990, S.732-746.
- Weidenfeld, Werner/ Korte, Karl-Rudolf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3.
- Wendt, Hartmu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Bilanz einer 40jä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In: *Deutschland Archiv*, 4/1991, S.386-395.
- Der Spiegel 26, 1996.
- 동서독 교류협력 자료집, 통일원, 1994.

도표 1-1: 1990년 6월까지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 유입자 수

연 도	동독인 유입자				합 계
	허가받지 않은 자 (탈출자)		허가받은 자 (이주자)		
	수	%	수	%	
1949	129,245	100			129,245
1950	197,788	100			197,788
1951	165,648	100			165,648
1952	182,393	100			182,393
1953	331,390	100			331,390
1954	184,198	100			184,198
1955	252,870	100			252,870
1956	279,189	100			279,189
1957	261,622	100			261,622
1958	204,092	100			204,092
1959	143,917	100			143,917
1960	199,188	100			199,188
1961. 1. 1. - 8. 12.	155,402	100			155,402
소 계	2,332,561	100			2,332,561
1961. 8. 13. - 12. 31.	51,624	100			51,624
1962	16,741	78.4	4,624	21.6	21,365
1963	12,967	30.4	29,665	69.6	42,632
1964	11,864	28.3	30,012	71.7	41,876
1965	11,886	40.2	17,666	59.8	29,552
1966	8,456	35.0	15,675	65.0	24,131
1967	6,385	32.6	13,188	67.4	19,573
1968	4,902	30.6	11,134	69.4	16,036
1969	5,273	31.1	11,702	68.9	16,975
1970	5,047	28.8	12,472	71.2	17,519
1971	5,843	33.6	11,565	66.4	17,408
1972	5,537	32.3	11,627	67.7	17,164
1973	6,522	42.9	8,667	57.1	15,189
1974	5,324	40.2	7,928	59.8	13,252
1975	6,011	36.9	10,274	63.1	16,285
1976	5,110	33.7	10,058	66.3	15,168
1977	4,037	33.4	8,041	66.6	12,078
1978	3,846	31.7	8,271	68.3	12,117
1979	3,512	28.1	9,003	71.9	12,515
1980	3,988	31.2	8,775	68.8	12,763
1981	4,340	28.1	11,093	71.9	15,433
1982	4,095	31.0	9,113	69.0	13,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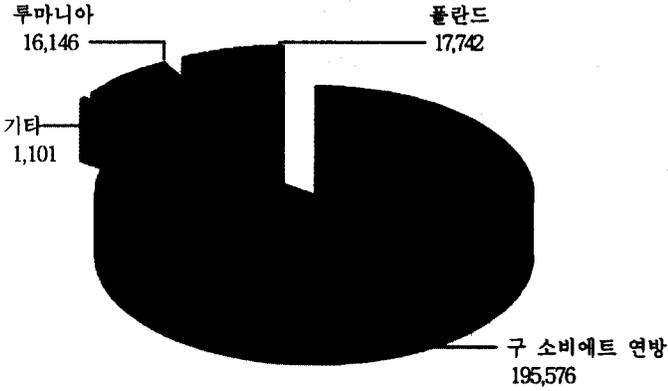
1983	3,614	31.9	7,729	68.1	11,343
1984	5,992	14.6	34,982	85.4	40,974
1985	6,160	24.7	18,752	75.3	24,912
1986	6,196	23.7	19,982	76.3	26,178
1987	7,499	39.6	11,459	60.4	18,958
1988	11,893	29.9	27,939	70.1	39,832
소계	234,664	38.1	381,396	61.9	616,060
1989	241,907	70.4	101,947	29.6	343,854
1990. 1. 1. - 6. 30.					238,384
총합계					1,590,844

도표 1-2: 1989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 유입자수

연도/월	동독인 유입자				합계
	허가받지 않은 자 (탈출자)		허가받은 자 (이주자)		
	수	%	수	%	
1989/1월	886	19.1	3,741	80.9	4,627
2월	921	18.4	4,087	81.6	5,008
3월	1,184	20.9	4,487	79.1	5,671
4월	891	15.1	4,996	84.9	5,887
5월	1,527	14.3	9,115	85.7	10,642
6월	1,783	14.3	10,645	85.7	12,428
7월	2,144	18.3	9,563	81.7	11,707
8월	8,143	38.9	12,812	61.1	20,955
9월	21,352	64.2	11,903	35.8	33,255
10월	26,426	46.3	30,598	53.7	57,024
11월					133,429
12월					43,221
총합계					343,854
1월-10월 합계	65,257	36.0	101,947	61.0	167,204
1990/1월					73,729
2월					63,893
3월					46,241
4월					24,615
5월					19,217
6월					10,689
1월-6월 합계					238,384

- 실린 곳: Hartmut Wend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Bilanz einer 40jä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In: Deutschland Archiv, 4/1991, S.386-395.

도표 2: 귀국 재외동포 수 (1993년 4월 현재)



1950년부터 1992년까지 총 수: 2,627,238명

- 실린 곳: Werner Weidenfeld / 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3.